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소비자 및 규제 관리국

규정 해석 문서
비상 대피 창문

2018-002

참고 자료:

- 1029절, 표 1021.2(1) 및 (2) 국제 건축법 2012 개정판(DCMR 12에서 수정됨)
- 1029.1절 일반. 이 장에 명시된 대피 수단 외에도 표 1021.2(1) 및 1021.2(2)에 따른 그룹 R-2 점유 건물 및 그룹 R-3 점유 건물에는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하 및 지상 4층 이하의 침실에는 이 절에 따라 외부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가 하나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하에 하나 이상의 침실이 있는 경우 각 침실에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해당 지하의 인접한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구부는 공공 도로 또는 공공 도로로 이어지는 뜰이나 마당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외:

1. 천장 높이가 80인치(2,032mm) 미만인 지하실은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하실 또는 침실에 비상구 또는 출입문을 열면 바로 공공 도로로 이어지거나 공공 도로로 이어지는 뜰, 마당이나 외부 출구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를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거주 공간이 없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피트(18.6㎡) 이하인 지하실은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층마다 2개의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 주거 시설이 포함된 그룹 R-2 건물에는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29.1절에는 표 1021.2(1) 및 1021.2(2)에 따라 그룹 R-2 점유 건물과 그룹 R-3 점유 건물에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1021.2(1) 및 1021.2(2)의 조항이 적용되는 비상구가 층마다 있는 그룹 R-2 건물은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층에 비상구가 2개씩 있는 그룹 R-2 건물에는 비상 탈출 및 구조용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2년판에 명시된 내용이 다소 모호했지만, 2018년판 내용 및 방향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 해석은 본 규정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서명]

Lynn Underwood, MCP
DCRA 최고 건축 책임자

2018년 1월 26일